

사무감사 및 지도점검 추진결과

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24. 12. 26.(목) ~ 12. 27.(금) [2일간]
- 감사대상 :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교부금 집행 및 업무처리 전반
- 방 법 : 청소대행업체 현지출장(사무실 및 업무현장)
- 감 사 자 : 청소행정계장 외 2명
- 감사결과 : 주의 2건, 권고 1건

II 감사사항

연번	감사사항	세부내용
1	○ 청소인력·장비 적정배치 및 운영실태	- 청소구역별(지역, 차량 등) 배치 실태 등
2	○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적정계산 및 지급	- 인건비 지급관련 실제 근무일수 적합 지급 여부 - 가족수당, 학비보조수당 등 제수당 적정 지급여부 등
3	○ 청소장비 및 비품 관리운영 실태	- 청소차, CT박스, 손수레 등 - 차량유지비 관련 유류구입단가, 차량수리비 적정여부 등 - 대비, 삽 등 기타 소모품수불실태
4	○ 청소대행 교부금 적정집행 여부	- 교부금 전반에 대한 지출서류 및 장부확인
5	○ 기타 업무처리 현황	-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횡수 등 - 저비용·고효율적 청소경영 방안 등

III

점검총평

- (투명성 및 효율성) 교부금 집행 시 모든 비목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 첨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특히, ‘군산시 수재민 기탁금 전달 및 환경관리원 자녀 치료비 전달(7.30.)’, ‘사랑의 연탄배달(10.26.)’, ‘직원 자녀 장학금 전달(12.6.)’, 등 지역사회 환원·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음



- (재발 방지) 교부금 집행과 청소관리 운영 상황이 양호하며, 일부 지출 서류의 보완사항을 현장에서 권고, 주의 조치하고,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

IV

감사결과

조치사항 : 주의 2건, 권고 1건

① 계약방식 개선 필요 ➡ 주의

- '23. 1월 지출 건(24,400천원)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 체결.

*비교견적, 수의계약사유서,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,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
⇒ 향후 2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 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약방식 개선 필요.

② 증빙서류 미비 ➡ 주의

- '23. 10월 지출 건(23,485천원)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2조(지출의 절차)에 따라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산(이메일)으로만 보관되어 있고 지출서류에는 누락되어 있음.
 - '23. 6월 군산시 축제 지원 인원 간식구입(500천원) 대금 관련하여 축제에 동원된 환경관리원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현장사진, 근무자, 근무표, 서명부 등)가 누락되어 있음.
- ⇒ 향후 각 지출 건에 대해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을 준용하여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.

③ 증빙서류 보완 ➡ 권고

- 청소차량유류대 구입 지출서류에 유종, 리터,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되어 있음. 다만, 유류대장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지출서류와 대조하여 확인 가능함.
- ⇒ 각 지출 건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·보관하여 지출서류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.

V 금후계획

- 감사 결과 통보 및 주의·권고 조치 시행 : 1. 10.까지
- 지속 지도점검 실시 : 연중

참고 근거법령 및 협약내용

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7조(처리상황의 감사)

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군산시의회에 보고하고,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가로청소 대행 협약서 제17조(근무감독)

④ “군산시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교부금 집행상황을 수시검사 할 수 있으며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.